

# “소급보호 조항 인정할 수 없다”

##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둘러싸고 출판계 반발 커

문체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출판계의 반발이 거세다. 문체부는 지난 4월 26일 법조계, 학계, 저작권관계자 및 음반·영상·출판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출판문화협회는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21일 이를 검토한 후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WTO체제에 따른 베른협약 수준의 외국인 저작권보호는 우리나라 출판문화에 충격과 위기를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며 업계의 견해를 천명한 바 있다. (아래 <표> 참조)

###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조항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크게 두 가지. 기왕에 로열티 없이 국내에 번역·소개해도(87년 이전 저작) 아무 하자가 없었던 저작물에 대해 이제는 새롭게 로열티를 챙겨줘야 하는 ‘소급보호’ 조항과, 개발도상국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4년유예’ 조항의 삭제 건이다.

먼저 ‘소급보호’ 조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하 트립스협정)은 협정발효 후(내년 1월1일 발효)부터 그동안 보호하지 않아도 되었던 외국인의 저작권을 부활시켜 소급해서 보호해주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3조의 단서 삭제와 부칙 3조의 1항). 이 안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할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범위가 더 확대되거나, 이제까지 적법하게 외국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온 출판인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의 해결을 위해 소급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도 불과 10년 정도만 더 혜택 볼 뿐이어서 출판계로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저작물이 내국인의 것보다 더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급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도 외국에서 발행된 당시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함으로써 국내법에 정한 보호기간이 적용되도록 했다. (3조1항 외국에서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한다.) 가령, 87년 법개정 이전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30년이어서 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만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이 조항조차도 ‘100년 소급보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57년 1월1일 80세로 사망한 사람이 20세에 쓴



지난달 26일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모습.

책(1897년 출간)이 있다면 그 책도 저작료를 지불하는 보호대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 100년 소급보호가 되는 셈이다.

다음은 개도국에 주어지는 4년유예 조항 포기. 트립스협정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개도국을 벗어날 때까지 트립스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출협윤청광 부회장은 “우리의 문화실정은 도서관의 1인당 평균 장서율이 아프리카의 튀니지(0.17권)와 비슷한 0.18권이다, 미국(8400여 곳)·일본(2000여 곳)의 공공도서관수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280여개뿐인 문화후진국이다”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트립스협정의 개도국 4년유예조항을 포기하고 외국인의 저작권을 선진국과 동등하게 소급보호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문화진흥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개도국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면서, 문화부문에서는 개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의 통계자료와 같이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 기존의 적법 이용을 보호 위한 경과조치

내년초 트립스협정의 발효까지는 몇가지의 경과조치가 있다. 먼저 소급보호 대상 저작물을 번역 혹은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의 복제물은 12개월의 배포유예기간 동안 처분해야 된다. 만약 이를 계속 복제·배포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보상청구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가령, 소급보호대상인 문학작품이 들어있는 세계문학전집을 내고 있는 출판사는 저작권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배타적 허락권’이 배

제돼 있어 또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즉, 국내의 특정출판사가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소급보호되는 문학작품에 대한 ‘배타적 허락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다른 출판사가 같은 작품을 번역한다 해도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헤밍웨이의 작품은 저작료를 내는 출판사는 모두 출판할 수 있다. 얼마전 베른협약 발효를 앞두고 앞다투어 외국으로 나가 고액을 들여 ‘배타적 허락권’을 맺었던 몇몇 출판사들은 헛일을 한 셈이고, 저항의 초점은 “한 작품으로 수십군데에서 저작료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이다.

또 이번 조약에는 ‘번역권의 10년소멸제도 규정’이 있다. 이는 “외국저작물이 공표된 지 10년 이내에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저작료를 줄 필요없이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인데, 출판계로부터는 “많은 악재를 위로하는 ‘당근’이 아니냐”는 냉소를 얻고 있다. 김종수 출협 상무이사는 “이는 우리의 학술·교육·문화에 관련된 기간출판의 기능마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부문이었지만 이 조항의 사용이 언제까지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소급조항 빠져나간 나라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조항들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학술도서의 번역출판은 거의 고사상태를 맞게 된다는 것이 출판계의 주장이다. 트립스협정 18조를 보면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은 88년 베른조약에 가입하면서 “이미 공유된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며 무차별 소급조항에서 빠져나간

<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방침에 대한 출판협회의 견해

1. ‘100년 소급보호’란 있을 수 없다.  
WTO체제에 따라 베른협약 수준의 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1988년 미국의 베른협약시행령과 같이 이미 공유된 저작물에 대한 불소급 원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정부는 WTO체제하에서 경제적 계산에만 집착하여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학문 및 출판문화의 발전없이 산업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WTO체제하에서 농어촌대책비로 15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접한 우리 출판인들은 ‘왜 우리 정부는 문화대책비, 특히 학술출판 진흥을 위한 보조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시급한 진흥책 수립을 촉구한다.
3. 학술출판 등 시장이 작은 전문출판 영역은 이제 설 땅이 없다.  
외국인의 저작권은 완벽히 보호하는데 비해 국내시장은 너무나 좁고 한정돼 있다. 과중한 로열티 부담에다 국내의 번역료 부담도 크고, 계약절차까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학술분야의 번역출판은 전면 위기에 봉착할 것이 틀림없다.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 출판인들은 UR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전면 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사례를 들어 “선진국도 그렇게 빠져나간 사례가 있는데 문화 개도국인 우리가 왜 그 조항에 발목을 잡아야 하느냐”며 이해 못할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상조(서울대 법대) 교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와 피저작권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것은 저작권자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며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정혜옥 기자